



<p>청구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li> <li>2.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li> <li>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li> <li>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li> <li>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li> <li>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li> </ol>	<p>수수료 없음</p>
<p>담당 직원 확인사항</p>	<p>사업자등록증</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등 안내 확인

본인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 제63조의2 및 제66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해당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6.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